

##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7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1.  
제출자 : 중구청장

### 1. 제정이유

- 가.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
- 나.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행위의 접근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행위의 신고방법 및 신고의 처리(안 제3조 ~ 제4조)
- 나.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, 신변보호(안 제5조 ~ 제7조)
- 다. 피신고자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(안 제8조)
- 라. 신고자 외에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분보장, 신변보호 및 보복행위 금지(안 제9조)
- 마.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(안 제10조)
- 바.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, 지급방법, 상한액 규정(안 제11조)
- 사.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및 환수 규정(안 제12조 ~ 제13조)

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# 4. 제정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포상금 지급사유 발생시 추경확보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9. 20 ~ 10. 11(의견 없음)

##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,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부조리 신고 포상금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.
2. “부조리 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
  - 나.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
  - 다.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

**제3조(신고방법)**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주민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창구, 이메일, 우편,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 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다.

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,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신고의 처리)**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,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1. 신고의 경위·취지 및 이유
2.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
3.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

**제5조(신고자 비밀보장)** ① 신고의 접수,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,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조(신분보장)**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-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·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7조(신변보호)**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.

-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,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8조(보복행위 금지)**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,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조자의 보호)**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,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0조(허위신고)**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1조(포상금 지급)**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.

② 산정된 포상금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급한다. 이 경우,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.

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2조(포상금 지급제외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또는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
2.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,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
3.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
4.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
5.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
6. 그 밖에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등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

**제13조(포상금 환수)** 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.

- ②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의안심사보고서

## (의안번호 794)

### 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

#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11. 11(목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11. 17(수)
- 라. 위원회 상정 : 2010. 11. 22(월)

#### 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강종진)

-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
-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행위의 접근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.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행위의 신고방법 및 신고의 처리(안 제3조 ~ 제4조)
- 나.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, 신변보호(안 제5조 ~ 제7조)
- 다. 피신고자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(안 제8조)
- 라. 신고자 외에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분보장, 신변보호 및 보복행위 금지(안 제9조)
- 마.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치(안 제10조)
- 바.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, 지급방법, 상한액 규정(안 제11조)
- 사.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및 환수 규정(안 제12조 ~ 제13조)

#### 5. 관련법규 :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 6. 검토의견

### 가. 본 제정 조례안은

- 공익신고제도 운영이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
-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함께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부패행위의 접근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.

### 나. 이에대한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5조에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도록 하는 등 『신고자 비밀보장』과
- 제6조에는 신고자의 『신분보장』을 위해서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
- 제7조 『신변보호』, 제8조 『보복행위 금지』, 제9조 『협조자의 보호』, 제10조 『허위신고』 등의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,
- 특히, 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에는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### 다. 이는

- 행정안전부의 『지방자치단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』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
- 공직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